

한국 게임전문미디어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한국 게임전문미디어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게임전문 미디어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

제3조 (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항. 한국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 2항.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운영

제4조 (소재지) 부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협회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매체 법인(대표자/발행인)으로 한다.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정회원 가입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회원 가입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입 후 1년간은 정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회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준회원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항. 협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협의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항. 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등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항. 협회 회원은 자의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항. 협회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임원을 선임한다.

협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1항.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감사, 자문위원 0명
- 2항. 이사사(정회원 및 준회원 1개사)

제9조 (임원의 선출)

- 1항. 협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 중 협회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2항. 협회의 임원은 대외활동이 가능한 정회원사 대표자(발행인) 중에 선출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러닝메이트'로 입후보 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항. 협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열고 새로 선임한다.
- 4항. 감사와 비상임이사, 자문위원 등은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0조 (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를 남겨 놓은 경우에도 총회(또는 임시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항.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항. 임원간 분쟁 조장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항. 협회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1항. 협회장과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항. 이사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여부, 이사사의 수는 총회에서 정하며, 해당사항의 수정도 총회 의결을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항. 임원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회칙에 규정된 직무를 행한다.
- 2항. 임원은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 및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의 구성)

- 1항. 이사회는 협회 회장 및 부회장과 이사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의 소집)

- 1항.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 2항.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협의회장 또는 이사회 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 1항.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협회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유고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 2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장의 부재시 부회장이 맡는다.
- 3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4항. 협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일 7일전까지 회원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 1항.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항.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 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항. 임원의 선출과 해임
- 2항.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항. 회비의 사용 및 사업수익 등 예산에 관한 사항
- 4항. 신규 회원사의 가입 승인 및 퇴출에 관한 사항(년 1회 한정)
- 5항.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사무국의 담당자가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및 구성)

- 1항. 협회 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형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2항.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사 또는 관련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을 후보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22조 (자문위원회의 업무) 자문위원회는 협의회 임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협회의 업무 및 이사회의 안건들에 대하여 자문하고 이사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3조 (재산의 구분)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항.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당시 회원들이 출연한 가입비용 등의 재산으로 한다.

2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수입금)

1항. 이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항. 수익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협회의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및 보고)

1항. 회계연도는 규정된 회계연도에 준한다.

2항.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해산 및 합병) 이 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한국 게임전문미디어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 한다.

2016 년 5 월 16 일

게임동아 게임메카 게임샷 게임조선 게임진 게임톡 게임포커스 겜툰 뉴스엔게임 데일리게임
(매체명 표기, 가나다순)

<부칙> 한국 게임전문미디어협회 가입기준 및 의결구조

회원 구성 : 정회원/준회원

의결 회의 : 총회/이사회

정회원 가입(승인) 기준

1. 게임전문 미디어로 창간 3년 이상 법인으로 해당 미디어 편집국 상근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1. 협회 회비 연체 및 미납이 없어야 한다.
1. 협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타 상세 기준은 이사회 논의로 정한 후, 부칙에 추가한다.

준회원 가입(승인) 기준

1. 게임전문 미디어로 인정되나 창간 3년 미만이거나 편집국 상근인력 2인 미만의 법인.
1. 게임분야 전문미디어는 아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게임 취재전문팀(기자 또는 PD)을 두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 (상세기준은 이사회 논의로 결정)
1.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으나 회비, 대표 참석 문제 등으로 준회원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
1. 준회원 가입 후 정회원 자격을 충족되는 경우 정회원으로의 자격변경 가능.

정회원/준회원 역할과 권한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1. 정회원은 협회 활동의 주축으로 모든 공동사업에 참여 의무와 권한이 있다.
1. 준회원은 협회 공동사업에서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1. 정회원 법인은 협회 임원이나 이사사로 입후보하거나 추천 자격을 갖는다.
1. 준회원은 협회 임원과 이사사를 추천할 수 있지만, 입후보하거나 추천 받을 수는 없다.
1. 이 외 정회원 및 준회원 역할과 권한은 이사회 논의로 정한다.

정회원/준회원 입퇴출 기준

1. 협회 출범 첫 해에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간 합의를 통해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집한다.
1. 협회 출범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회원(정회원, 준회원)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연 회비 외에 별도로 협회가 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협회 창립 이후 1년간은 가입비 면제)
1. 협회 출범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은 정회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년간 준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협회 탈퇴는 회원사 자의에 의해 이뤄지며, 사무국에 탈퇴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1. 한번 탈퇴한 회원사가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1년 간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협회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이 외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비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각 정해진 회비를 낸다. 연회비 규모는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정회원 : 연 200 만원 준회원 : 연 100만원

총회

1. 준회원 이상 협회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

이사회

1. 회장단과 이사회, 자문위원단
1. 이사회는 각 회원사의 대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1. 회장 추천으로 준회원 1곳을 1년 임기의 이사회로 참여시킬 수 있다.

회장단 임기 권한

1. 2년, 연임 가능
1. 가부동수 일 때 회장 의견으로 승인
1. 사무국 설치 및 인원구성 등 사무국 운영 결정
1. 자문위원 추천 및 선임(임기제)
1.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무국

1. 사무국은 협회 회원의 관리 및 협회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1. 사무국은 협회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맡는다.
1. 사무국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